



Govern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
Muriel Bowser, Mayor



Mayor's Office on Asian & Pacific Islander Affairs
David Do, Director

2017 년 1 월 30 일

DC 사업주 귀하:

DC 시장실 산하 아시아 태평양 주민국으로서, 저희는 DC 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사업주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의 변동 사항을 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에 따라, 고용 서비스 부서 (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)가 DC 최저임금 관련법에 변경 사항이 있음을 귀하께 안내드립니다.

개정된 법에 따라 워싱턴 특별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Gratuity(팁/봉사료)를 받음에 따라 최저 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분기별 임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.

- **최저임금:** 2016 년 7 월 1 일부터 워싱턴 특별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\$11.50 이다.
- **Tip(봉사료)을 받는 고용인:** 고용주는 봉사료를 지급받는 고용인에게 시간당 \$2.77 을 지급해야 한다.
- **분기별 임금 보고:** 시간당 최소 \$2.77 이상을 받으면서 Tip(일하는 봉사료)를 받고 일하는 고용인을 채용한 고용주들은 분기 마감 30 일 이내에 분기별 임금 보고서를 작성하여, 고용인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시급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.

분기보고서 제출기한:

- 1 분기 (1 월 1 일 -3 월 31 일): 4 월 30 일까지
- 2 분기 (4 월 1 일 -6 월 30 일): 7 월 31 일까지
- 3 분기 (7 월 1 일 -9 월 30): 10 월 31 일까지
- 4 분기 (10 월 1 일 -12 월 31 일): 1 월 31 일까지

다음 분기 임금 보고서는 2017 년 2 월 3 일까지 제출해야 하며,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6 년 10 월 1 일에서 2016 년 12 월 31 일까지를 기준으로 근무한 직원의 봉사료 관련 내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감일 이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서 워싱턴 DC 의 임금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정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(202-727-3120) 또는 이메일 (oapia@dc.gov)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. 한국어-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귀하께서 겪으시는 문제나 불편 사항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.

DC 시장실 산하 아시아 태평양 주민국
국장 데이빗 도

